

인권윤리위원회

국어국문학과 · 비교문화협동과정

2026년 10월 27일 (화)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

- “인권위원회 규정” (수정안) 검토, 향후 계획, 토론
- 세부적인 “시행 지침”에 대한 논의
- 제1기 위원회 구성과 역할
- 위원회 설치와 규정으로 포괄되지 않는 사항, 향후 대책과 방향
- 학과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장기적인 과제
- 그 밖의 의견과 제안 등

목표와 취지

-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관계로 인한 갈등
- 권위주의적 분위기와 문화 만연
- 정당하고 분명한 문제 제기
- 학과 내 공식 기구·규정 필요성 합의
- 공론적·제도적 절차와 해결 모색
- 실질적인 운영 방안 모색, 공동의 실천과 변화 지향

추진 경과 (9월)

- 8월 8일 (토) 현대문학·비교문화 전공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
- 9월 2일 (수) 교수회의에서 기구 설립 및 규정 제정 동의
- 9월 8일 (화) 학과 홈페이지 “인권윤리위원회” 게시판 개설
- 9월 16일 (수) “인권윤리위원회(가칭) 및 임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예비 모임” 개최
국어국문학과 개강 총회, 폭력 예방 교육 안내, 기구 설립과 규정 제정 약속
- 9월 21일 (월) “인권윤리위원회(가칭) 설치 및 내규와 지침 제정 안내” 게시
- 9월 30일 (수) “인권윤리위원회 규정” 초안 작성, 타교 사례 조사와 수집

추진 경과 (10월)

- 10월 2일 (금) **준비위원회** 조직, 구체적인 논의 시작
- 10월 6일 (화) 공용 메일 개설 **acta21kr@skku.edu** (상담, 건의, 제보, 신고 등)
- 10월 12일 (월)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 10월 15일 (목) “인권윤리위원회 규정” **가안** 공개
- 10월 19일 (월)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 10월 22일 (목) 규정 “**수정안**” 공개
- 10월 27일 (화) “수정안” 검토와 토론

향후 계획

- 11월 “규정” 계속 수정 및 보완
- 12월 학과 교수회의 논의, 내규로 확정
문과대학, 인권센터, 교무처 등 검토
- 1~2월 “시행 지침” 마련
교육 및 학술 기획 등 세부 실행 계획 마련
- 2월 “규정”과 “시행 지침” 공표 및 제1기 위원회 공식 출범
사례 조사와 수집, 향후 “사례집” 발간 준비

준비위원회

- 평등하고 민주적인 토론 및 합의 중요
- 현대문학·비교문화 전공
대학원생 5인, 박사 4인, 교수 4인 (총 13인)
- 학과 내 모든 전공 및 석사과정 포괄 필요
→ 문제의식 공유하며 함께해야 함
- “기구” 설립과 제도화, “규정” 및 “시행 지침” 논의
→ 제1기 위원회 공식 출범 준비

위원회의 성격과 규정의 지향

- 학과 내 공식 기구로서 위상
- 제도화된 소통 및 논의 창구이자 상시적인 문제 해결 절차
- 구성원 사이의 민주적인 대화와 협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 일상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의 기본 원칙 명문화
- 문제 사안에 대해 학과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과 합리적인 처리
- 예방 조치 및 교육·학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수정안

- 준비위원회 논의와 토론을 통해 명칭 변경과 방향 수정
 - 인권 **윤리**위원회 → 인권위원회
 - 인권과 **권익** 보호에 초점
 - 학과의 기본 원칙과 지향을 명확하게 제시
-
- **가안 (10.15)** 비효율성, 실제 운영의 어려움 예상
 - **수정안 (10.22)** 조항 간소화, 권한과 의무 등 균형
→ 생략한 세부 사항은 대부분 “**시행 지침**”으로 보완하여 명시 예정

가안 (10.15)

제1조 명칭

제2조 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제3조 인권 및 권익 침해의 정의

제4조 인권과 권익 침해 및
비윤리적 언행의 유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제7조 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제8조 위원회의 운영과 절차

제9조 규정의 효력 개시와 개정

제10조 교내 관련 규정

제11조 시행 부칙

수정안 (10.22)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 원칙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적용 대상

제5조 조직 구성

제6조 의결

제7조 운영

제8조 인권·성평등 교육

제9조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사건 처리

부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이하 학과) 구성원들의 인권 및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안에 대응함으로써 평등하고 윤리적인 학문 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학과의 모든 구성원은 인권을 보장받고 상호 간의 인권과 권익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2. 학과의 모든 구성원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연구 경력, 연구 주제, 직위,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3. 학과의 모든 구성원은 성차별, 여성 혐오,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언어 폭력, 괴롭힘, 권한 남용, 연구 부정, 부당 지시, 노동 착취 등의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관계, 불공정한 교육 및 연구 여건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인권 및 권익 침해 사안의 대응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신상 등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를 말한다.
2. **인권 및 권익 침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인격권, 연구권, 학습권, 근로권, 재산권의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차별, 성희롱, 성폭력, 스톱킹, 권위를 남용한 괴롭힘 행위,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수업권의 침해 등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박탈,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적용 대상)

1.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학과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1) 교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 2) 연구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3) 직원 (정규직원, 비정규직원)
 - 4) 재학생 및 휴학생
 - 5) 대학원생 및 수료생
 - 6) 교환학생 및 교류학생
2. 이 규정은 피해자 혹은 가해자 중 일방만이 제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5조 (조직 구성)

1. 인권 및 권익 침해 사안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학과 내에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 2인, 비전임교원 및 강사 2인, 학생 3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학과 소속 전임교원인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의결)

1.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규정의 제·개정은 제1항에 따른다.

제7조 (운영)

1. 위원회는 매 학기 1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인권 및 권익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정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과 전체 교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인권·성평등 교육)

1. 위원회는 학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성평등 교육을 제공한다.
2. 학과 구성원은 위원회의 인권·성평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한다.

제9조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사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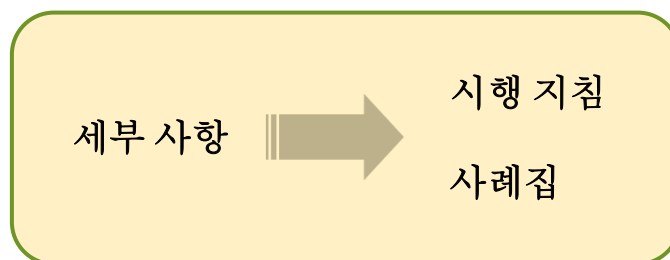
1. 위원장은 인권 및 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안 관련자를 포함한 학과 구성원 모두에게 다음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의 시행은 성균관대학교 상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 1) 인권 및 권익 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 2)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촉 금지 및 공간 분리
- 3) 사건의 내용 및 관계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
- 4) 사건 처리와 회복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따돌림, 폭행, 폭언 등 2차 피해에 대한 방지

2. 위원회는 피해 신고 접수 시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과, 인권센터 등 외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부칙

1. 위원회는 별도의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공지한다.
2. 이 규정은 2027년 0월 0일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 역시 이 규정에 따른다.



시행 지침

- 각종 차별 행위 (법령에 근거)
- 인권·권익 침해 유형 (인권센터 규정에 근거)
 - 인격권, 학업권, 연구권, 근로권, 재산권, 교수권 침해, 신체적 침해, 기타
- 위원회 권한과 역할, 의무와 책임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초점
- 위원회 운영과 절차
 - 실제 논의와 처리 과정의 신속성, 공정성
 - 학과 및 상위 기관에 요청, 권고, 협조
- 단발성 사건 처리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유효한 활동

질의응답·난상토의

유효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

- 각 전공 내, 전공 간 문제의식 공유와 토론 필요
- 대학원 학생회, 교강사협의회 활성화 중요
- 새로운 실험, 모범적인 운영, 실질적인 효과 기대
- 법적·행정적 한계와 난관 극복
- 학과 단위의 합의와 실천, 타 학과와 연대를 통해 확장

인권윤리위원회

국어국문학과 · 비교문화협동과정

2026년 10월 27일 (화)